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5년 7월 15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안 덕 근

●대통령령 제35655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4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학력·경력자로서 초급·중급·고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2. 등급의 변경(특급 전기공사기술자로의 등급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별표 4의2 제3호의 학력·경력자란에 5)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6)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7)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별표 4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3]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제12조의5제2항 관련)

대 상 자	교육 시간	교육 내용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및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20시간	기술능력의 향상

※ 비고

1. 양성교육훈련의 교육 내용의 세부 사항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위 대상자가 교육 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양성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은 별표 4의2 제3호의 학력·경력자란 5)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서의 등급 인정 또는 등급 변경 인정을 받기 위해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여 이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풍부한 현장 경험과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전기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기공사 기술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대상자를 초급 전기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중급·고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전기 관련 학과가 아닌 학사·전문학사 취득자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 졸업자도 일정 기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서의 등급 인정 및 등급 변경 인정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